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6.10.08]
(제정) 2026.10.08 조례 제2429호

관리책임부서명 : 관광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46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영유아 동반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과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장애 관광 관련 시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광약자와 무장애 관광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장애 관광 사업)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의 관광 수요와 관광지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관광지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 개선

3. 무장애 관광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및 정보 접근성 개선

4. 무장애 관광 상품, 관광코스 및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관광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이동수단 연계 및 현장 안내·지원

6. 휠체어 등 관광 활동에 필요한 이동보조기기의 비치·대여 및 관리

7. 관광사업자와 관광 관련 시설의 운영자·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무장애 관광에 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9.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무장애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파주시 무장애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무장애 관광 관련 주요 시책과 사업의 추진 방향

2. 관광지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 개선

3. 무장애 관광 사업의 추진 실적 점검 및 개선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제25조에 따른 파주시관광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 중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활성화 및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장애 관광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2026. 10. 8. 조례 제2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